

## 기숙사 운영규정

제정	2004. 3. 1
개정	2010. 4.
개정	2012. 3. 1
개정	2016. 3. 1
개정	2016. 8. 29
개정	2017. 3. 1
개정	2017. 8. 1
개정	2017. 11. 1
개정	2018. 3. 1
개정	2018. 7. 30
개정	2018. 10. 01

#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학생의 면학을 위한 생활편의를 제공함으로써, 공동생활을 통한 인성함양을 도모하고자 대학에 설치한 학생기숙사(기숙사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.

**제2조(명칭)** 기숙사의 명칭은 ‘청강학사(여자)’, ‘비전학사(남자)’라 한다.

**제3조(개관기간)** 기숙사 개관기간은 학칙에 명시한 수업기간으로 하되, 필요에 따라 총장 또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 개관기간을 연장, 단축 또는 휴관 할 수 있다.

**제4조(이용제한)** ① 기숙사 폐관기간에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기숙사 운영 목적에 부합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총장 또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허가할 수 있다.

② 본 교 재학생 이외의 단체가 기숙사의 시설물을 사용코자 할 때에는 규정에 따라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, 필요에 따라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.

**제5조(사생활동)** ① 질서있고 명량한 생활을 도모하고 학문의 연구와 교양의 함양을 위한 사생의 활동은 관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.

② 사생의 자치적인 사내활동을 위하여 사생자치회를 둘 수 있다.

**제6조(사생수칙)** 관장은 기숙사의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기숙사 사생수칙을 따로 정한다.

### 제 2 장 운영위원회

**제7조(설치)** 기숙사 운영의 기본방침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숙사운영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**제8조(구성)**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
- ① 기숙사운영위원회는 그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복지위원회가 대신하며 위원장은 기숙사 관장이 맡는다.
- ② 복지위원회의 간사 외 기숙사운영위원회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.

**제9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.

1.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
2. 사업보고, 결산에 관한 사항
3. 기숙사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4. 사생수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5. 기숙사비에 관한 사항
6. 기타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

**제10조(회의)** ① 위원회의 회의는 복지위원회 회의 일정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별도로 개최할 수 있다.

### 제3장 회계년도와 예산결산(삭제)

**제11조(회계년도)** (삭제)

**제12조(예산 및 결산)** (삭제)

### 제 4 장 조 직

**제13조(조직)** 본 기숙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관장, 직원을 둘 수 있다.

**제14조(직무)** ① 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, 사생을 지도하고 기숙사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.

- ② 직원은 관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관장하고 사생을 지도 감독한다.

### 제 5 장 입사 및 퇴사

**제15조(입사자격 및 신청)** ① 기숙사에 입사할 수 있는 자는 해당학기 등록을 필한 재학생, 총장 또는 관장이 인정한 자라야 한다.

- ② 재학생의 입사신청은 정해진 기간에 입사신청서와 서약서를 작성하여 신청한다.
- ③ 신입생의 입사신청은 정해진 기간에 입시원서를 통해 입사신청을 한다.

**제16조(입사생 선발기준)** 입사생 선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① 신입생은 입학성적, 통학거리를 고려하여 선발한다.
- ② 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, 상·별점, 통학거리를 고려하여 선발한다.
-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 수급권자, 국가유공자는 반영점수에 가산점을 주며 신체장애인 중 보행 장애인은 우선 선발하며 그 외 신체 장애인은 장애인실 여분이 있으면 장애인실, 여분이 없을 때는 장애학생 도우미와 함께 일반실에 배치할 수 있다.
- ④ 신입생과 재학생의 배정비율은 7대 3으로 한다.
- ⑤ 스쿨별 기숙사 배정인원은 신입생의 경우 전년도 등록인원에 비례하여 배정하고 재학생의 경우 선발 당시 재학인원에 비례하여 배정한다. 따로 정한다.
- ⑥ 스쿨별 선발기준은 스쿨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⑦ 스쿨에서 기숙사 신청자원이 없는 경우에는 타 스쿨의 기숙사 탈락자 중 총점이 높은 순서로 선발한다.

**제17조(입사자격의 제한)**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.

- ① 학칙에 의해 징계처분을 받은 자
- ② 제19조에 의한 기숙사 당연(강제)퇴사자
- ③ 법정 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
- ④ 휴학 중인 자
- ⑤ 전 학기 입사하였던 자 중 별점이 10점 이상인 자(별점 10점 이상 취득 다음 학기 입사 제한)
- ⑥ 기타 관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

**제18조(징계)** 사생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생수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처분 한다. 징계는 상별기준표에 따라 별점을 부여하는 형태로 처분한다.

- ① 사생수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
- ② 이 규정 및 사생수칙에 명기되지 아니한 행위라 하더라도 기숙사의 질서유지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한 경우

**제19조(퇴사)** 사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기 중에는 퇴사할 수 없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퇴사 원서를 제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사생으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당연퇴사 처분하고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- ① 사생수칙을 위반하였거나 기숙사내 질서를 문란케 한 자
- ②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
- ③ 납부금을 체납한 자
- ④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
- ⑤ 사생의 퇴사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물품을 반납하고 퇴사하여야 한다.

**제20조(경비)** 사생은 기숙사 입퇴사시 아래 기준에 의하여 기숙사비를 납부 또는 환불받는다.

① 입사시는 당해연도에 책정된 기숙사비(보증금, 입사비, 관리비) 를 납부한다. 중도 입사시는 아래 표의 기준에 따른다.

기숙사비 분류	납부금액
관리비	당해연도 책정된 관리비를 중도입사일 기준 남은기간 일할계산해서 납부
입사비, 보증금	당해연도 책정된 금액 전액 납부

② 퇴사시는 입사비를 제외한 입사보증금, 잔여 관리비를 환불받으며. 관리비 환불은 아래 표의 기준에 따른다. 단, 당연퇴사의 경우 관리비는 반환하지 않는다.

학사개시전	학사개시일 4주경과전	학사개시일 4주 경과 후 8주 경과 전	학사개시일 8주 경과 후 12주 경과 전	학사개시일 12주 경과 후
전 액	3/4	1/2	1/4	반환하지 아니함

**제21조(외박)** ① 사생은 사생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대학 종합 정보시스템에 신청하여야 하며, 야간 실습실 사용으로 인한 외박의 경우에는 실험실습실사용신청 자료로 대신 한다.

**제22조(비품 및 시설물 사용)** ① 각 실의 비품이 파손 됐을 경우 관장 또는 직원에게 보고한 후 교환 할 수 있으며, 분실한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.

② 기숙사 벽에 못을 박거나 규정된 이외의 시설은 이용 할 수 없으며, 공용물의 파손, 분실시에는 개인이 변상한다.

## 제 6 장 사생 자치회

**제23조(구성)** 기숙사에는 사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사내생활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 장 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생 자치회를 둘 수 있다.

**제24조(임무)** 사생 자치회는 학문탐구에 전력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계획하고 실천한다.

- ① 자율점호 및 면학 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
- ② 사내생활의 질서유지 및 사내의 환경미화에 관한 사항
- ③ 사생 자치회 행사에 관한 사항
- ④ 사생회비 책정 및 예산, 결산에 관한 사항

## 부 칙

-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6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-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-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-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.